

환 경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미준수

기 관 명 수영구, 기장군

내 용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(이하 “순환골재 등”이라한다)의 의무사용 건설공사¹⁰⁴⁾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,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시·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또한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

104)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도로,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나, 포장면적이 9,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,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,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,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,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,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(2014.3.6 기준)

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.

또한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,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,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하도록 되어 있다.

1. 수영구의 경우

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 법령 미준수(○○○○과)

수영구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“2014년 ○○○주차장 건설공사(○○동)”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, 순환골재를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함으로써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를 위반하였다.

【표 1】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

연 번	공사명	착공일	준공 (예정)일	설계 반영 여부		사용계 획서 제출 여부	사용실 적 신고 여부	비 고
				순환 골재	재 활용 제 품			
1	2014년 ○○○주차장 건설공사(○○동)	2014.9.4	2014.11.1 2	미반영	해당 없음	-	-	준공
2	2014년 ○○○주차장 건설공사(○○동)	2014.9.4	2014.11.1 2	미반영	해당 없음	-	-	준공
3	2015년 ○○○주차장 건설공사(○○동)	2015.10.6	2015.12.4	미반영	해당 없음	-	-	준공

4	2016년 ○○○ 공동주차장 건설공사(○○동)	2016.7.28	2016.12.1 5	미반영	해당 없음	-	-	준공
5	2016년 ○○○ 공동주차장 건설공사(○○동)	2016.8.1	2016.10.2 1	미반영	해당 없음	-	-	준공
6	○○동000-00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	2016.10.2 1	2016.12.1 9	미반영	해당 없음	-	-	준공
7	○○동000-000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	2016.10.2 1	2016.12.1 9	미반영	해당 없음	-	-	준공
8	○○동000-00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	2016.10.2 8	2016.12.2 6	미반영	해당 없음	-	-	준공

※ 수영구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 제출자료 재구성

②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 법령 미준수(○○과)

수영구 ○○○○국 ○○과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“○○○로(○○동) 하수시설 정비공사”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,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함으로써 「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를 위반하였다.

【표 2】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

연 번	공사명	착공일	준공 (예정)일	설계 반영 여부		사용계 획서 제출여 부	사용실 적 신고여 부	비 고
				순 환 골 재	재 활 용 제 품			
1	○○○로(○○동) 하수시설 정비공사	2015.04.2 0	2015.08.0 7	미반영	미반영	-	-	준공
2	○○○○로000번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	2015.08.2 7	2015.10.0 5	미반영	미반영	-	-	준공
3	○○천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(○○○○시장)	2016.12.1 9	2017.03.1 8	미반영	미반영	-	-	공사 중

※ 수영구 ○○○○국 ○○과 제출자료 재구성

③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 업무 소홀(○○○○과)

수영구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사업 발주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접수하여, 접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에 따라,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와 건설과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,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를 위반한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와 ○○과에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따라 1,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함에도,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,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【표 3】 수영구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

구분	대상(위반) 사업수	설계 미반영 (미사용)	사용계획서 미제출	사용실적 미보고	비고
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	8(8) 0(0)	8 0	- -	- -	준공 공사 중
○○○○국 ○○과	2(2) 1(1)	2 1	- -	- -	준공 공사 중
계	10(10) 1(1)	10 1	- -	- -	준공 공사 중

2. 기장군의 경우

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 법령 미준수(○○○○과)

기장군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“○○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정비공사”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, “○○○

마을 마을하수도 수해복구공사” 등 3개 사업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고, “○○마을 오수관거 설치공사” 등 2개 사업은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고,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한 “○○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정비공사” 등 3개 사업과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한 “○○마을 오수관거 설치공사” 등 2개 사업은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, “○○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정비공사” 등 4개 사업은 준공 전 제출하여야 하는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.

그 결과 ○○○○과는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와 제34조에 따른 보고, 검사 등을 위반하였다.

【표 3】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

연 번	공사명	착공일	준공 (예정)일	설계 반영 여부		사용계획서 제출여부	사용실적 보고여부	비 고
				순환 골재	재활용 제품			
1	○○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정비공사(2차)	2014. 05.26	2015. 3.01	반영	반영	미제출	미제출	준공
2	○○마을 오수관거 설치공사(1차, 2차)	2014. 06.02	2015. 3.18	반영	미반영	미제출	미제출	준공
3	○○○마을 마을하수도 수해복구공사	2015. 02.24	2015. 5.24	미반영	미반영	-	-	준공
4	○○(○○)마을내 통합오수관로 설치공사	2015. 11.09	2016. 8.2	반영	미반영	미제출	미제출	준공
5	○○면 ○○리 00-0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	2016. 4.7	2016. 6.14	미반영	미반영	-	-	준공
6	○○마을 차집시설 정비공사	2016. 5.02	2016. 12.27	반영	반영	미제출	미제출	준공

7	○○ 마을하수처리장 노후관로 정비공사	2016. 7.11	2016. 11.27	미반영	미반영	-	-	준공
8	○○시장 주변 하수관거 설치공사	2016. 11.25	2017. 7.2	반영	반영	미제출	-	공사 중

※ 기장군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 제출자료 재구성

②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등 미준수(○○○○과)

기장군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“○○마을 공영주차장”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, “○○마을 공영주차장”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은 순환골재를, “○○마을 공영주차장” 설치공사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, “○○읍 ○○동 노상주차장” 설치공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함으로써 「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를 위반하였다.

【표 4】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

연 번	공사명	착공일	준공 (예정)일	설계 반영 여부		사용계 획서 제출여 부	사용실 적 신고여 부	비 고
				순환 골재	재활용 제품			
1	○○마을 공영주차장	2014. 11.7.	2014. 12.23.	미반영	해당 없음	-	-	준공
2	○○○마을 공영주차장	2015. 3.11.	2015. 5.29.	미반영	해당 없음	-	-	준공
3	○○○마을 공영주차장	2015. 3.12.	2015. 6.9.	미반영	해당 없음	-	-	준공
4	○○마을 공영주차장	2015. 10.30.	2015. 11.28.	해당 없음	미반영	-	-	준공
5	○○읍 ○○동 노상주차장	2016. 9.22.	2016. 10.28.	미반영	미반영	-	-	준공

※ 기장군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 제출자료 재구성

③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 업무 소홀(○○○○과)

기장군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사업 발주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접수하여, 접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에 따라,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와 ○○○○과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,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를 위반한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와 ○○○○과에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따라 1,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하고, 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하고 사용실적을 미보고한 ○○○○과에 300만 원이하 및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함에도,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,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【표 5】 기장군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

구분	대상(위반) 사업수	설계 미반영 (미사용)	사용계획서 미제출	사용실적 미보고	비고
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	7(7) 1(1)	5 0	4 1	4 -	준공 공사 중
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	5(5) 0(0)	5 0	- -	- -	준공 공사 중
계	12(12) 1(1)	10 0	4 1	4 -	준공 공사 중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, 기장군수는

[시정] ① 준공된 건설공사(사업) 발주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하시고

② 공사 중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사업은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(설계 반영)하고, 사용계획서의 제출 및 사용실적 보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설 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라며

③ 건설공사(사업) 발주자 및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업무협의를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